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2018년 9월 6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8월 16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8년 9월 6일 상정·수정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)

가. 제안이유

-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가고자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조항 중 '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'에 대해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

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,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됨(안 제5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부서와 협의

다. 기타 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선희)

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자동차공회전(이하 ‘공회전’)을 유발하고 공회전에 의한 대기환경오염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자동차정비 시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공회전 제한 및 예외 현황

- 현행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서울시내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,

〈대기온도에 따른 공회전 허용시간〉

대기온도	0℃이하	5℃미만	5~25℃미만	25℃이상	30℃이상
허용시간	미적용	5분	2분	5분	미적용

제5조제3호에서는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대상을 ‘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’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〈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〉

- 경찰차, 소방차,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차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
- 냉동차, 냉장차,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
-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

2) 자동차정비업소 현황 등

- 2018년 5월 기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(시설기준 50m² 이상)는 3,728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, 50m² 이상의 영세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.

〈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현황〉

구 분	시설기준	수리 범위	개소수
자동차종합정비업	1,000m ² 이상	모든 점검·정비 및 튜닝	206
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	400m ² 이상		311
자동차전문정비업	50m ² 이상	원동기, 연료, 조향장치 등의 탈부착 정비 및 판금·도장 제외	3,211

- 지난 5월에는 자동차 정비에 있어 엔진을 탈거하여 세척하는 것보다 정비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‘브라운 가스¹⁾’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 경우 엔진 시동을 켠 상태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MBC보도가 있었음.

〈엔진 클리닝 비교〉

구 분	가 격	비 고
연료첨가제, 카본제거제	2 ~ 5만원	불스원샷, 모비스 등등(첨가 후 바로 주행가능)
플러싱 (약품사용)	3 ~ 5만원	30 ~ 1시간 이내(공회전)
브라운가스	10 ~ 15만원	1시간 이내(공회전)
엔진탈거세척	25 ~ 30만원	6시간

MBC보도 이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2,219개소에 대한 브라운가스 및 플러싱²⁾ 엔진클리닝 시공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 171개소³⁾에서 동

1) 수소와 산소의 혼합비율이 정확히 2:1인 가스로 엔진의 손상 없이 카본만을 제거하기 위해 브라운가스가 연소실로 들어가면 연소실을 약간 고온으로 만들어 주어 연소실 안의 카본을 구석구석 태워주어서 엔진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함

2) 플러싱 시공은 약품을 사용하고 브라운가스 시공과 같이 차량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루어짐

3) 점검기간 : ’18. 5. 25(금) ~ 6. 8(금), 2주간

시공방법으로 자동차정비를 시행하고 있고 171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
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 미설치 정비업소가 151개소(92.6%)에
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〈자동차정비업소 지도·점검 결과〉

점검개소	공회전 시공 현황				점검 미실시 (폐업 등)	집진기 설치 현황	
	소계	브라운가스	플러싱	중복시공		설치	미설치
171	163	24	156	17	8	12	151

3)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규정 정비 (안 제5조제3호)

- 현행 조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비 중인 자동차의 경우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일부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시간 및 비용상의 문제로 인해 브라운 가스나 플러싱 엔진클리닝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비업소가 집진기 등의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미설치⁴⁾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,

자동차정비 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공회전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공회전 유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점 검 반 : 3개반, 12명(市 친환경기동반 및 환경단체 합동)

4) 현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정비업소가 집진기 등 배출가스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 중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1조의2 별표 21의2)

- 따라서 안 제5조제3호와 같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조항 단서에 ‘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 한다.’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정비 시 성행하고 있는 브라운 가스 엔진클리닝 시공 등에 따른 공회전을 허용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별도 정화장치를 통해 저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, 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됨.
- 다만, 대다수 자동차정비업소가 집진기 등의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미 설치하고 있고 조례 개정 이후 브라운가스 및 플러싱 엔진클리닝을 위해 서는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이로 인해 비용⁵⁾이 발생되는 바, 조례 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대기오염 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하는 기간을 갖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5) 전기집진방식 및 필터사용방식이 있으며, 장치 가격은 319~550만원 수준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기간을 가짐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6일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기간을 가짐.

2. 주요 골자

-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18년 12월 1일부터로 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3.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수 없이 하는 자동차</u></p>	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. 다만,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 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 차는 제외한다.</u></p>	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. 다만,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3.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</u></p>	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p>1. 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. 다만,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.</u></p>